

대학원 수학과 운영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수학과와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수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수학과 소속 교수들은 수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교육과정) 대수학, 해석학, 위상수학 및 기하학, 응용수학의 전공분야를 둔다.

제5조 (과목개설) 대학원 과목개설은 대학원 학생들의 전공 분야별로 이수 계획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임교수 및 학과교수들이 협의하여 개설했다.

제6조 (교·강사 배정) 교·강사 배정은 당 학기의 개설 과목에 부합하도록 학과교수들이 협의하여 배정한다.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지도교수를 정할 수 있으며, 두 번째 학기를 이수하기 전에 지도교수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자격시험

제8조 (종합학력시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은 대학원이 요구하는 시한 내에 종합학력 시험을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SCI급 저널에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로 논문게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1.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의 종합학력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2. 종합학력시험은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다.

제10조 (외국어시험 과목) 외국어 시험은 대학원의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다.

제6장 학위과정

제11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1. 대학원은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을 둔다. 석사학위가 없으면 박사학위과정을 응시할 수 없다.
2.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선택은 대학원 입학 시에 학생의 선택에 따른다.
3.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만족한 후 박사학위취득을 포기하는 경우에 석사학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학과 교수회의에서 석사학위 수여 여부를 심사한다.

제12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3조 (예비논문 제출 및 심사)

1. 석·박사 학위논문 심사는 전임교수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2. 논문심사를 신청한 학생은 예비논문을 심사위원들에게 논문발표 전에 미리 제출한다.
3. 석사논문의 대체로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주임교수를 포함하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4. 학위논문을 대체하는 연구보고서의 학과 제출 시기와 심사는 석사논문의 심사 일정과 같다.

제14조 (예비발표) 석·박사논문 제출자는 모두 학위논문의 심사 전에 예비발표를 가진다.

제15조 (논문심사위원) 석·박사학위 논문심사 위원은 학과 전임교수 3인 이상으로 한다.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외부 전임교수 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6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수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